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역의 해상교통관제망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 하면서 센터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의 연구개발사업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감 1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교육원에 수사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인력 150명(경감 1명, 경사 4명, 경장 34명, 순경 57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하고, 신형 연안 구조정 및 대형헬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명(경감 2명, 경위 6명, 경사 3명, 경장 11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청에 마약 수사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감 4명)을 증원하고, 사천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5명, 경장 5명, 순경 4명)을 증원하며,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취지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인력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소속기관 인력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의 인력 1명(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 설정 기준에 따라 평가 기간을 조정하며,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종전의 직급(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으로 환원하며, 인천해양경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보안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정 1명, 경감 1명)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5명(경정 8명, 경감 7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과학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정원 4명(7급 2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해양경찰청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은 자율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폐지하며, 양성평등정책팀은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고 명시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정원 5명(7급 5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하였던 정원 5명(경위 5명)을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증원한 정원 16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급 3명) 중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며, 정원 14명(5급 1명, 6급 8명, 7급 3명, 9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9명(9급 9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항공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1명(경감 1명)을 경정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별표7의3과 별표7의4를 삭제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 계 “513”을 “5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8”을 “423”으로 하며, 경감 “54”를 “55”로 하고, 경위 “88”을 “87”로 하며, 경사 “116”을 “115”로 하고, 경장 “54”를 “53”으로 하며, 순경 “25”를 “32”로 하고, 일반직 계 “95”를 “97”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6”으로 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46”을 “55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7”을 “422”로 하며, 경정 “56”을 “55”로 하고, 경감 “54”를 “55”로 하며, 경위 “86”을 “85”로 하고, 경사 “115”를 “114”로 하며, 순경 “24”를 “31”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

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9”로 하며, “사회복지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를 삭제하며, 전 화상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14”를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8”을 “184”로 하며, 경감 “25”를 “26”으로 하고, 경위 “44”를 “46”으로 하며, 경사 “45”를 “46”으로 하고, 경장 “22”를 “23”으로 하며, 순경 “28”을 “29”로 하고, 일반직 계 “36”을 “37”로 하며,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1”을 “1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14”를 “22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7”을 “183”으로 하며, 경감 “25”를 “26”으로 하고, 경위 “43”을 “45”로 하며, 경사 “45”를 “46”으로 하고, 경장 “22”를 “23”으로 하며, 순경 “28”을 “29”로 하고, 일반직 계 “37”을 “38”로 하며,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4”를 “1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9”를 “20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85”를 “189”로 하며, 경장 “52”를 “5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 계 “11,872”를 “12,05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828”을

“10,962”로 하며, 경감 “630”을 “638”로 하고, 경위 “1,009”를 “1,017”로 하며, 경사 “1,985”를 “1,993”으로 하고, 경장 “3,045”를 “3,087”로 하며, 순경 “3,937”을 “4,005”로 하고, 일반직 계 “1,044”를 “1,095”로 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을 “5”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4”를 “22”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3”을 “104”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3”을 “214”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2”를 “18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7”을 “8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5”를 “9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1,863”을 “12,0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801”을 “10,940”으로 하며, 경정 “180”을 “181”로 하고, 경감 “627”을 “634”로 하며, 경위 “994”를 “1,007”로 하고, 경사 “1,983”을 “1,991”로 하며, 경장 “3,043”을 “3,085”로 하고, 순경 “3,921”을 “3,989”로 하며, 일반직 계 “1,0

62”를 “1,108”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을 “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4”를 “22”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0”을 “101”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7”을 “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15”를 “21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3”을 “181”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26”을 “32”로 하고,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5”를 “90”으로 한다.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 계 “227”을 “2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39”를 “38”로

한다.

별표3 및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하며, 같은 부칙 제4조 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0월 31일”으로 하며, 같은 부칙 제4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

정책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1명)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5명(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5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18명(방송무대주사보 3명, 방송무대서기보 15명),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사회복지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4의2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보건연구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공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시설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③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2 정원 1명(경정 1명)은 2025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경감 1명으로 본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1항 관련)

구분	소속	명칭	위치
광역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군산시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항만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경기도 평택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여주시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강원도 동해시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안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경인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태안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여수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여주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통영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 관련)

1. 해양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사국 수사심사과	10명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국제정보국 보안과	4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1명 (총경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5명 (총경 3명, 경정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1명 (경감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1명 (경무관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70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7명, 경사 15명, 경장 19명, 순경 23명, 9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74명 (경감 4명, 경위 8명, 경사 14명, 경장 18명, 순경 3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60명 (경사 21명, 경장 18 명, 순경 2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항공단 업무(지방해양경찰청)	60명 (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40명 (경정 3명, 경감 14명, 경위 12명, 경사 41명, 경장 50명, 순경 17명, 9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33명 (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292명 (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 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12명 (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9) 형사 요원(지방해양경찰청)	51명 (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해양경비업무(지방해양경찰청)	192명 (경감 10명, 경위 31명, 경사 52명, 경장 87명, 순경 1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1) 해양오염방제업무(지방해양 경찰청)	41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2명, 9급 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②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u>	4. <u>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u>
5. ~ 13. (생략)	5. ~ 1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u>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u>)	<u><삭 제></u>
① 「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u>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u> 을 둔다.	
② <u>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u>	
③ <u>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u>	
1. <u>해양경찰 분야 첨단 기술 활용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u>	

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기획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책의 수립

4.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

업의 총괄·조정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생략)

제2조 삭제 <2021. 7. 30.>

제3조 삭제 <2022. 1. 18.>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은 2023

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2의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

명 및 경장 1명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①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과 같음)

<삭제>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보안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2024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 호의 경감 1명 및 경정 1명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3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 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경위 1명 및 경감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u>2024년 12월 31일</u> ----- <u>2025년 1월 1일</u> -----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 표 7의2 제1호의 경감 7명 및 경 정 8명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3년 1월 1일</u>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 의2 제1호의 경위 7명 및 경감 8 명으로 본다.	② ----- ----- ----- <u>2024년 12월 31일</u> ----- ----- <u>2025년 1월 1일</u> ----- ----- ----- -----.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팀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24년 12월 31일</u> -----.

③ (생 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및 경위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3년 10월 31일-----.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

-----.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양성평등정책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3을 적용한다.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13</u>		<u>520</u>	+7	
경찰	공무원	계	<u>418</u>		<u>423</u>	+5	
		•		•	•		
		•		•	•		
경	감		<u>54</u>		<u>55</u>	+1	
경	위		<u>88</u>		<u>87</u>	-1	
경	사		<u>116</u>		<u>115</u>	-1	
경	장		<u>54</u>		<u>53</u>	-1	
순	경		<u>25</u>		<u>32</u>	+7	
일반	직	계	<u>95</u>		<u>97</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 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u>3</u> · · <u>5</u> ·	<u>6</u> · · <u>4</u> ·	+3 -1
---	--	--	-----------------------------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46	551	+5
경찰공무원 계	417	422	+5
경정	56	55	-1
경감	54	55	+1
경위	86	85	-1
경사	115	114	-1
순경	24	31	+7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 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6</u> · ·	<u>9</u> · ·	+3
<u>사회복지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u> <u>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u> · ·	<u>1</u> · ·	<u><삭 제></u> · ·	-1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u> <u>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u> <u>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u> <u>서기보 · 전산서기보 · 운전서기</u> <u>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 ·	<u>1</u> · ·	<u><삭 제></u> · ·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별표 5]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4	221	+7
경찰공무원 계	178	184	+6
경감	25	26	+1
경위	44	46	+2
경사	45	46	+1
경장	22	23	+1
순경	28	29	+1
일반직 계	36	37	+1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 안전주사보 · 공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1	12	+1

[별표 5의2]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4	221	+7
경찰공무원 계	177	183	+6
경감	25	26	+1
경위	43	45	+2
경사	45	46	+1
경장	22	23	+1
순경	28	29	+1
일반직 계	37	38	+1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 안전주사보 · 공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4	15	+1

[별표 6]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99</u>		<u>203</u>	+4	
경찰공무원	계		<u>185</u>		<u>189</u>	+4	
	.		.		.		
	.		.		.		
경장			<u>52</u>		<u>56</u>	+4	
	.		.		.		
	.		.		.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1,872	12,057	+185
경찰공무원 계	10,828	10,962	+134
경감	630	638	+8
경위	1,009	1,017	+8
경사	1,985	1,993	+8
경장	3,045	3,087	+42
순경	3,937	4,005	+68
일반직 계	1,044	1,095	+5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	5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 수산물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u>24</u>	<u>22</u>	-2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 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103</u>	<u>104</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213</u>	<u>214</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82</u>	<u>180</u>	-2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77</u>	<u>83</u>	+6
·	·	·	
·	·	·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u>45</u>	<u>90</u>	+45
·	·	·	
·	·	·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1,863	12,048	+185
경찰공무원 계	10,801	10,940	+139
경 정	180	181	+1
경 감	627	634	+7
경 위	994	1,007	+13
경 사	1,983	1,991	+8
경 장	3,043	3,085	+42
순 경	3,921	3,989	+68
일반직 계	1,062	1,108	+46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u>3</u> · ·	<u>5</u> · ·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u>24</u> · ·	<u>22</u> · ·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u>100</u> ·	<u>101</u> ·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학예연구 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	<u>7</u> .	<u>2</u> .	-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 .	<u>215</u> . .	<u>216</u> . .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183</u> . .	<u>181</u> . .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순경 ·	<u>26</u> ·	<u>32</u> ·	+6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 ·	<u>45</u> · ·	<u>90</u> · ·	+45

[별표 8]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27</u>	• <u>226</u>	-1
경찰공무원 계	<u>39</u>	<u>38</u>	-1
•	•	•	
•	•	•	